

제복 지급 기준 및 복제(제47조의7 관련)

1. 제복 지급 기준 및 시기

지급 대상	종 류				지급수 량	지급주 기	비 고
	근무 복	벨트	모자	신발			
선 장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3등 항해사	○	○	○	○	2벌 (하계용 /동계 용)	2년	직위와 이름을 표 기한 이름표 패용
기 관 장 1등 기관사 2등 기관사 3등 기관사	○	○	○	○	2벌 (하계용 /동계 용)	2년	
부 원	○	○	○	○	2벌 (하계용 /동계 용)	2년	
여객안전관리선 원 및 그 밖에 제복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직 무 종사원	○	○	○	○	2벌 (하계용 /동계 용)	2년	
비 고 1. 하계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, 동계는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제복은 근로시간 중에 한하여 착용하며, 선박소유자가 당해 지방의 기후·근무 장소 그 밖의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착용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. 2. 승선 근무 중 직무 수행 여건에 따라 별도의 작업복을 착용할 수 있다.							

2. 제복의 종류·재질·제식 및 형상은 선박소유자가 직책별로 구분하여 정한다.